

#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83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자살예방위원회 구성·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
- 나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의 자살예방 교육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례 실효성 강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살예방위원회의 구성·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(안 제9조)
- 나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개정사항 ‘자살예방 교육’ 신설(안 제21조)
- 다. 시행일 및 자살예방위원회 존속기한 명시(안 부칙 제1조, 제2조)
- 라. 그 밖의 문구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##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  - 개선의견: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
  - 반영사항: 반영완료(안 제9조제2항)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적정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 
검토의견: 해당없음

## 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2. 13. ~ 3. 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이가희(☎ 2133-7838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한”을 “위해”로, “수립·시행함으로써”를 “수립·시행하여”로 한다.

제5조 전단 중 “자살시도자 등”을 “자살시도자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심리상담·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”을 “지원 및 사후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권역별”을 “체계적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자치구청장과”를 “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계 공공기관, 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3. 아동·청소년·청년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되고, 해당 안전이 심의·의결된 후 자동 해산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,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맡으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제4항(중전의 제3항)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위촉하되,”를 “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제2호가목에서 사목까지의 분야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

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되고 서기는 자살예방사업 관련 팀장이 된다”를 “말고 서기는 자살예방팀장이 말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## 1. 당연직

가. 행정1부시장

나. 시민건강국장

다. 안전 관련 실·국·본부장

## 2. 위촉직

가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나.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자살예방센터”라 한다)의 장

다.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라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마. 신문·방송·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

바.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

사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

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자살예방”을 “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5조”를 “제3조제3호”로 한다.
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
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”을 “자살시도자등을 위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시는 프로그램을”을 “시장은 제1항에 따라”로, “자살자·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”을 “자살자·자살시도자등”으로 한다.

1.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

2.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

4. 그 밖에 자살시도자등의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
제17조의 제목 “(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)”을 “(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살유해정보”를 “자살유발정보”로, “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”를 “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”를 “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”로 한다.

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,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자살예방 교육)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조례 제5456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조(목적) -----<br>----- 위해 -<br>----- 수립·시행하<br>여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,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 | 제5조(시장의 책무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자살시도자등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-----.                |
| 제6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|
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성·연령·계층·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

4. ~ 6. (생략)

7.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·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

8. ~ 13. (생략)

③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.

④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8조(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) 시

-----.

② 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아동·청소년·청년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 지원  
및 사후관리

8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각 호 -----  
----- 체  
계적인 -----  
---.

④ -----  
-----  
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계 공공기관, 그 밖에 ---  
-----  
-----.

⑤ 제4항 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) --

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 
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자  
살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 
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 
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 
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 
이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  
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된다.

<신설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
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  
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  
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  
는 시의원

-----  
----- 서울특별시 자  
살예방위원회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 
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  
되고, 해당 안전이 심의·의결  
된 후 자동 해산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 
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 
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, 부위  
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맡으며,  
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 
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 
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----- 당연직 및 위촉직 위  
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에  
해당하는 사람 -----  
----- 위촉하되, 위촉  
직 위원은 제2호가목에서 사목  
까지의 분야별 ---.

1. 당연직

가. 행정1부시장

나. 시민건강국장

2.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자살예방센터”라 한다)의 장

3.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
4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

다. 안전 관련 실·국·본부 장

2. 위촉직

가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나.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자살예방센터”라 한다)의 장

다.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라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마. 신문·방송·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

바.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

사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<삭 제>

<삭 제>

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 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5. 신문·방송·통신 등 언론분  
야 전문가

6.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  
는 시민단체의 대표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자

<신 설>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  
회 존속기한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 
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  
사는 정신건강과장이 되고 서기  
는 자살예방사업 관련 팀장이  
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 
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 
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  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
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⑤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 
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 
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  
례」를 따른다.

<삭 제>

⑧ -----  
-----  
----- 말고 서기  
는 자살예방팀장이 맡는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  
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 
개최한다.

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 
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

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
6.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

7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제15조(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등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----- 위원회의 -----  
-----  
---.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<삭제>

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
7. -----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-----  
--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3조제3호-----  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) ① ---- 자살시도자등을 위

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 
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 
다.

1.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  
그램

2. 정서지원프로그램

3. 상담 및 치료

4. (생 략)

<신 설>

5. 그 밖에 자살시도자등의 치  
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  
는 프로그램

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 
구축하는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 
의료기관, 자살예방센터 및 자  
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  
한 프로그램을 개발, 구축하도  
록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  
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 
있어서 자살자·자살시도자 및  
그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 
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

해 -----  
-----  
--.

1.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

2.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

<삭 제>

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4. 그 밖에 자살시도자등의 심  
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 
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  
원

<삭 제>

<삭 제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-----  
----- 자살자·자살시도자등--  
-----  
-----

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 
구축) ① 시장은 자살유해정보  
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  
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  
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  
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  
예방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  
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21조·제22조 (생 략)

조례 제5456호

부칙 제2조(자살예방위원회에 대  
한 존속기한) 제7조에 따른 서  
울특별시자살예방위원회의 존  
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 
2년으로 하며, 기간만료 후 서  
울특별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 
통합하여 운영한다.

<신 설>

-----.

제17조(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 
구축) ① ----- 자살유발정보-  
-----  
-----  
----- 자살유발정보예방체  
계-----.  
② ----- 자살유발정보  
예방체계-----  
-----.

제21조(자살예방 교육) 시장은 법  
제17조에 따라 자살방지 및 생  
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  
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
하여야 한다.

제22조·제23조 (현행 제21조 및  
제22조와 같음)

<삭 제>
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

<신 설>

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2조(서울특별시 자살예방  
위원회의 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 
자살예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 
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 
한다.

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자살예방 교육 관련한 자살예방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### 4. 작성자

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이가희 (☎ 2133-7838)